

대한민국정부



제19753호 2020. 5. 19.(화)

【법 률】

○법률제17254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5
○법률제17255호(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10
○법률제17256호(한국과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	12
○법률제17257호(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3
○법률제17258호(쌍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15
○법률제17259호(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5
○법률제17260호(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16
○법률제17261호(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	16
○법률제17262호(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23
○법률제17263호(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4
○법률제17264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25
○법률제17265호(형법 일부개정법률)	27
○법률제17266호(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군보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27
○법률제17267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9
○법률제17268호(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30
○법률제17269호(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31
○법률제17270호(김지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32
○법률제17271호(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	32
○법률제17272호(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33
○법률제17273호(탄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34
○법률제17274호(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35
○법률제17275호(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36
○법률제17276호(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36
○법률제17277호(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37
○법률제17278호(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38

(이면 계속)

발행 행정안전부 문의 ☎(044)205-1492, 205-1493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법률제17279호(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42
○법률제17280호(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44
○법률제17281호(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45
○법률제17282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46
○법률제17283호(아이돌문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50
○법률제17284호(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	55
○법률제17285호(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56
○법률제17286호(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58
○법률제17287호(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	59
○법률제17288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62
○법률제17289호(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63
○법률제17290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64
○법률제17291호(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	68
○법률제17292호(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69
○법률제17293호(은행법 일부개정법률)	70
○법률제17294호(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71
○법률제1729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72
○법률제17296호(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75
○법률제17297호(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	77
○법률제17298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79
○법률제17299호(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80
○법률제17300호(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80
○법률제17301호(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90

【대 통 령 령】

○대통령령제30678호(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91
○대통령령제30679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92
○대통령령제30680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92
○대통령령제30681호(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96
○대통령령제30682호(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97
○대통령령제30683호(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98
○대통령령제30684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00
○대통령령제30685호(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06
○대통령령제30686호(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09
○대통령령제30687호(해외건설 추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10
○대통령령제30688호(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11
○대통령령제30689호(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2
○대통령령제30690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18
○대통령령제30691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18
○대통령령제30390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정정)	119

제19753호

관 보

2020. 5. 19.(화요일)

제30조제2항제1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과 해임에 따른 신고절차,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원활한 관리 및 교육을 위하여 관리주체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도록 함(제19조).
- 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그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 법인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를 승계함(제21조의2 신설).
- 다. 관리주체가 적정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문재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장

김현미

●법률 제1728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753호

관 보

2020. 5. 19.(화요일)

③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5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0조제4항”을 “제50조제5항”으로 한다.

제5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0조제5항”을 “제50조제6항”으로 한다.

제87조제1항제3호 중 “경우”를 “경우(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시·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시·군·구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바, 시·군·구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법은 운수종사자 자격 취득 결격사유를 성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자격의 취소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만 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바,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자격 취소가 가능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 제17289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번호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건축공간연구원